

대구예술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규정

(개정 2008.11.05. 교무위원회)

(개정 2019.06.20. 교무위원회/자구수정)

(개정 2020.03.09. 교무위원회/자구수정)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대구예술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에 의하여 임명한다.

1. 위원장은 입학처장으로 한다.(개정 2008.11.05.)(개정 2020.03.09.)
2. 위원은 우리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개발 및 계획 심의 사항
2. 대학입학전형 관리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대학입학 적격자 선발기준 모형개발에 관한 사항
4. 대학입학 전형관리 업무의 주요사항 심의
5.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임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한 후임위원의 임기는 결원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 또는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8조 (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3분의 1이상의 위원과 간사는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 (결과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회의록에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제청으로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